



밀피타스 시

455 EAST CALAVERAS BOULEVARD, MILPITAS, CALIFORNIA 95035-5479

일반 정보 : 408-586-3000, TDD: 586-3013, www.milpitas.gov

사업자 면허 소지자 귀하 :

2017년 2월 21일, 밀피타스 시의회는 시 전체에 최저 임금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 292호를 채택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의 사업 허가 요건이 적용되거나 시에 사업 시설을 유지하는 고용주는 밀피타스에서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의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직원에게 **시간당 \$18.20**인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베이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에 근거한 최저 임금을 조정합니다. 조례 292호에 명시된 최저 임금 요건은 성인과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다음 요건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과 권리를 알리는 별첨 최저 임금 공식 통지 및 최저 임금 근로자 권리를 직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직원이 근무한 모든 시간을 기록하고 4년 동안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조례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차별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고용주는 고용 시 직원에게 고용주의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시의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직원은 조례에 따라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직원은 조례 위반으로 고용주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밀피타스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급여 기록을 열람 할 수 있으며 직원의 복직 명령, 불법적으로 삭감한 최저임금 지급 명령 및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최저 임금 요건 위반을 집행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408\) 535-8430 또는 mywage@sanjoseca.gov](https://www.milpitas.gov/688/Minimum-Wage)로 밀피타스 시에 연락하셔도 좋습니다.